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21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의원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이념 수정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의2).
-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 등의 의무 강화(안 제4조제3항).
-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신설(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4. 16. ~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을 “적극 협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매년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자살예방”을 “구청장이 자살예방”으로, “위하여 구청장이”를 “위하여”로 한다.

4.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5.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의 제목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자살예방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정책은 <u>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u>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p> <p>② (생 략) <u><신 설></u></p>	<p>제2조(기본이념) ① ----- -- <u>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살”이란 <u>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u></p> <p>2. “자살위험자”란 <u>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자살시도자”란 <u>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u></p> <p>4. “상담”이란 <u>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u></p>

를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
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
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
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
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③ (생략)

제7조(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2. (생략)

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략)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5.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 구청장이 자살예방 -
----- 위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1.·2. (현행과 같음)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8. (생략)

⑤·⑥ (생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② (생략)

<신 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자살예방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현행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시행 2022. 8.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 2022. 8.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아동·청소년·중년층·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개정 2019.10.10.>
5.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개정 2019.10.10.>
6.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개정 2019.10.10.>
7.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신설 2019.10.1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자살 관련 상담 <개정 2019.10.10.>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9.10.10.>

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2.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5.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2.8.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9.10.10.>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9.10.10.>

3. 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 <개정 2019.10.10.>

4. 의사, 약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7.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구의 직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0.>

③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개정 2019.10.10.>

2.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개정 2019.10.10.>

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관, 사업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또는 단체의 장은 구민의 교육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6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구청장은 자살자 ·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7조(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0.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795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3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을 “복지교육국장, 행정문화국장” 으로 한다.

⑯ 생략

부 칙 (제1054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을 “복지가족국장” 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⑫~⑰ 생략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4. 7. 12.]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1. 15.]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2022. 6. 10.>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7. 2. 8.]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2022. 2. 3.>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